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 | | | |
|------|---------------|----|---|
| 제정 | 2012. 1. 6. | 조례 | 제2375호 |
| 일부개정 | 2013. 11. 7. | 조례 | 제2504호 |
| 일부개정 | 2016. 7. 29. | 조례 | 제2749호 |
| 일부개정 | 2017. 1. 5. | 조례 | 제2791호 |
| 일부개정 | 2017. 11. 16. | 조례 | 제2886호 |
| 일부개정 | 2017. 11. 16. | 조례 | 제2891호(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 일부개정 | 2019. 4. 10. | 조례 | 제3048호 |
| 일부개정 | 2019. 10. 28. | 조례 |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
| 일부개정 | 2019. 11. 15. | 조례 |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 일부개정 | 2020. 7. 10. | 조례 |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 일부개정 | 2020. 10. 15. | 조례 | 제3244호(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일부개정 | 2020. 11. 13. | 조례 |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
| 일부개정 | 2020. 12. 31. | 조례 | 제3275호 |
| 일부개정 | 2021. 2. 19. | 조례 | 제3290호(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 일부개정 | 2021. 7. 9. | 조례 | 제3325호 |
| 일부개정 | 2022. 8. 12. | 조례 | 제3430호 |
| 일부개정 | 2022. 10. 20. | 조례 |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1.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5.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7.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2장 체육진흥 및 육성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17. 1. 5.>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육성지원
2.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② 삭제 <2017. 1. 5.>

③ 삭제 <2017. 1. 5.>

④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9., 개정 2020. 12. 31.>

제4조의2(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식 운동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운동부 운영상태 평가 및 지원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 5.]

제4조의3(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당연직: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체육 관련 장학사,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안양시의회 의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1. 5.]

제4조의4(지원위원회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체육꿈나무 지원에 필요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의2(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 체육회 및 안양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경비

②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2.>

[본조신설 2021. 7. 9.]

[제목개정 2022. 8. 12.]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 5.>

1. 시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양시 체육회장(이하 “시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5., 2021. 7. 9.>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7. 11. 16., 2021. 7. 9.>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협의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목개정 2020. 12. 31.]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10. 28>

② 시 공무원 또는 시 체육회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3. 11. 7.]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삭제 <2017. 1. 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⑤ 협의회 회의의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9.>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기금은 50억원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7., 2017. 1. 5., 2017. 11. 16., 2020. 12. 31.>

[제목개정 2013. 11. 7.]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원금·이자수입 및 투자수익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적립금 및 투자사업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 및 투자수익금은 제1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체육진흥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 5.>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1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투자수익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6., 2021. 2. 19.>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진흥 기금조성을 위한 투자 수익사업
5.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
6.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제17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 5.]

제17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안양시의회 의원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 10. 28.>

[본조신설 2017. 1. 5.]

제17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7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7. 1. 5.]

[제목개정 2020. 12. 31.]

제1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7조의6(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7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7조의8(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8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 2013. 11. 7.>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이자수입금 및 투자수익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심의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기금운용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기금운영에 관한 집행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19조의2(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5.]

제19조의3(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본조신설 2017. 1. 5.]

제20조(투자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투자사업을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투자사업의 운영 및 위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④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에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제목개정 2017. 1. 5.]

제21조 삭제 <2017. 1. 5.>

제5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22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0. 12. 31.>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8. 그 밖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은 안양시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2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안양시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원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비 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개정 2017. 1. 5.>

제28조(설치종목) 안양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29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30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5.>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③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31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우수선수는 다년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④ 선수단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향상, 장비·합숙소의 관리 등을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제3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
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8.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의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36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를 안양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목개정 2017. 1. 5.]

제38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신설 2017. 1. 5.>

제39조(상담시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1. 영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4. 10.]

제40조(위탁) ① 시장은 제39조에 따른 신고·상담시설을 영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7. 9.>

[본조신설 2019. 4. 10.]

제4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중건 제39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41조의2(수당) 지원위원회, 협의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7. 1. 5.]

[종전 제39조의2에서 이동 2019. 4. 10.]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 11. 7.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9. 조례 제274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2019. 4. 10.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3 까지 생략

④4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④5 부터 ④9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8 까지 생략

⑦9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0 부터 ⑧6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3290호,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 제3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